도비 장애수당 지급 지침



【제·개정 이력】

일 자	주요내용	사유	비고
2013. 1월	도비장애수당 지침 제정	2012년 4·20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요구안 반영에 따른 장애수 당 추가 지원	장애인복지과—785호 (2013. 1. 17.)
2016. 3월	도비장애수당 지급대상자 기준 변경	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최저생계비 기준이 기준중위소득으로 변경됨 에 따른 기준 변경	장애인복지과—4245호 (2016. 3. 24.)
2019. 6월	도비장애수당 지급대상자 기준 변경	장애인복지법 개정사항(장애등급제 폐지) 반영에 따른 기준 변경	장애인복지과—7829호 (2019. 6. 19.)

도비 장애수당 지급 지침

I 목적 및 근거

□ 목 적

○ 근로능력 상실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 중 특히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가구의 소득 보장을 위해 추가 지원

□ 근 거

○ 장애수당 추가 지원계획 방침(장애인복지과-9732호, 2012. 9. 11.) 「4·20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요구안 '13년 당초예산 반영 및 조치계획」

Ⅱ 주요내용

□ 지원대상

○ '19. 6. 20. 기준 수급자(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이면서 장애정도가 붙임 [별표]에 해당하는 재가 등록장애인) ※ '19. 6. 20. 이후 신규 수급권자는 미지원(기존 수혜자에게만 계속 지급함)

□ 지원내용

○ 매월 20일*에 지원대상자 명의의 계좌로 2만원을 입금 *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일

□ 지급기준일

○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자격이 취소되거나 장애정도가 붙임 [별표]에 해당하지 않게 될 경우, 결정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함

_ 사후관리

-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자격 취소 또는 장애정도 변동에 따라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될 경우, 부당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
- 환수조치 관련 사항 등은 「장애인연금 사업안내」 규정을 준용함

[별표] 지원대상자의 장애정도

장애유형	장애정도		
 상지절단장애	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		
하지절단장애	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		
 상지관절장애	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% 이상 감소된 사람		
하지관절장애	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% 이상 감소된 사람		
상지기능장애	두 팔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(근력등급 0.1)		
하지기능장애	두 다리를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(근력등급 0.1)		
-1 12 10 0 11	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하여 보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		
	양쪽 팔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		
뇌병변장애	한쪽팔과 한쪽다리의 마비로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전적으로 타인의		
	도움이 필요한 사람		
	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		
	지수가 32점 이하인 사람		
시각장애	좋은 눈의 시력이 0.02이하인 사람		
7] 7] 7] 0]	지능지수가 35 미만인 사람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하		
지적장애	여 일생동안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		
	정신분열병으로서 망상, 환청, 사고장애,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또는 사회적		
	위축과 같은 음성증상이 심하고 현저한 인격변화가 있으며, 기능 및 능력장애로		
	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며,		
	GAF척도 점수가 40이하인 사람(정신병을 진단받은지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에		
	한한다.) 양극성 정동장애(조울병)로 기분, 의욕,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심한 증상기가		
정신장애	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,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		
ि । ।	목 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며, GAF척도 점수가 40이하인 사람		
	반복성 우울장애로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, 의욕, 행동 등에 대한 우울		
	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,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		
	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며, GAF척도		
	점수가 40이하인 사람		
	분열형정동장애로 위와 같은 정신장애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		
	ICD-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(자폐증)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		
자폐성장애	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이하이며,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GAS척도 점		
	수가 20이하인 사람		

	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, 안정 시에도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		
	어나서 (가)~(사)항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한 점수가 30점 이상인 사람		
	(심장질환을 진단받은지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에 한한다.)		
	(가) 운동부하검사 또는 심장질환증상중등도 : 5점 만점		
	(나) 심초음파 또는 핵의학검사 상 좌심실구혈률, 선천성 심장질환의 경우 (선		
	천성 심장질환 기능 평가), 심실구혈률이 정상이면서도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는		
심장장애	심장질환의 경우 (좌심실구혈률 정상이면서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는 심장질환의		
	심장질환증상중등도 가중 기준표) : 8점 만점		
	(다) 검사소견 : 10점 만점		
	(라) 심장수술 및 중재시술 병력 : 8점 만점		
	(마) 입원병력 : 5점 만점, 최근 9개월 이내		
	(바) 입원횟수 : 3점 만점, 최근 9개월 이내		
	(사) 치료병력 : 3점 만점, 최근 9개월 이내		
	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안정시에도 산소요법을 받아		
	야 할 정도의 호흡곤란이 있고,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(1초시 강제호기량) 또는 폐		
호흡기장애	확산능이 정상예측치의 25%이하이거나,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		
	중에서 안정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 55mmHg 이하인 사람		
	만성호흡기 질환으로 인하여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		
	하는 사람 만성 간질환(간경변증, 간세포암종 등)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 기능이		
	Child-Pugh 평가 상 등급 C이면서 (1)~(2)항의 합병증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		
간장애	사람		
신경계	(1) 가성뇌증		
	(2) 내과적 치료로 조절되지 않는 난치성 복수		